

약정서	<p>1.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p> <p>2. 공제대출금 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때</p> <p>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p> <p>4.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약정에 위반한 때</p> <p>5. 계약이 무효가 된 때</p> <p>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중앙회는 계약해지후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p> <p>제6조(공제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시 우선변제) 공제금, 해약환급금 또는 반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회가 지급할 금액에서 대출원리금 등 모든 채무액을 공제합니다.</p> <p>제7조(부대비용) 대출에 따르는 제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판상 및 재판외의 제비용, 손해금은 중앙회가 정하는 요율·시기·계산방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여 변제합니다.</p> <p>제8조(이행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중앙회 또는 그 지역본부·센터로 합니다.</p> <p>제9조(주소변경통지) 본인은 약관 제27조에 따라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내용을 중앙회에 알려야 하고, 변경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p>
------------	--

공제계약대출이자 자동이체 약관	
1. 본인(계약자)이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가 정하는 납기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지정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출금 대체하여 주십시오.	
2. 자동납부지정계좌의 잔액이 납기일 현재 중앙회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납기일 이후에는 중앙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미납금액을 출금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납입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순서는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4. 자동납부이체개시일은 중앙회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중앙회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개시일로 합니다.	
5. 자동납부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중앙회의 청구대로 출금하기로 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중앙회가 협조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6. 자동납부 금액은 해당 납기일의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 합니다.	

본인은 대출 신청 및 대출금을 수령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2호(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위 약정서의 각 조항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구비서류	
일반대출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의료대출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신분증 사본 ② 입원확인서 원본(3일 이상 입원기간 명시, 퇴원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 ③ 진단서 원본(진단서에 입원기간 포함시 입원확인서 생략 가능)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해대출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신분증 사본 ② 재해확인서 원본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원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재해확인서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의거, 발급받은「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만 인정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해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만 인정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희생대출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신분증 사본 ② 희생개시결정문 원본 및 동 결정문의 확정증명원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파산대출	①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신분증 사본 ② 파산선고문 원본 및 동 선고문의 확정증명원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추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 인감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22. 5. 16. 개정시행) (2023. 9. 26 개정, 2023. 10. 16 시행)